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예산 322-	(전화번호 481)	전결규정 전결사항
처리기간	84. 8.	기획관리실장	
시행일자	84. 8.	<i>27</i>	
보존연한		<i>기획관리실장</i> <i>884. 8. 27</i>	

보 조 기 관	예산담당관	<i>7/16. 8. 27</i>	협	
	예산총괄계장	<i>YJW</i>	조	법무담당관
				<i>24. 8. 27</i>

기안책임자	배인환	<i>84. 8. 27</i>	통	첨부
경 유 수 신 참 조	각안참조	<i>고시제 1부</i>	<i>1984. 8. 27</i>	<i>1984. 8. 27</i>
제 목	198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			

(제 1안) 내부결재

1. 1984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

84년 8월 24일자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따로붙인 고시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고시안: 따로붙임

따로붙임: 고시안 1부. 끝.

정서

(제 2안)

수신: 공보관

발신: 과장

관인

제목: 시보게재 의뢰

1. 1984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의 추가경정예산을

84년 8월 24일자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었기 따로붙인 고시안을 통보하오니 시보에 게재

발송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: 고시안 1부. 끝.

1205-25(2-1)A(감)
1981. 12. 18승인

정직 질서 창조
74

190mm x 268mm (인쇄용지 2급 60g/m²)
초당 칭(1,500,000매 인쇄)

실사	1984.8.22	제 267
판 전	임시제장	법무 담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67호

198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

- 일반회계: 976,109백만원
- 특별회계:
 - 지 하 철: 103,887백만원
 - 수 도: 198,089 "
 - 병 원: 6,900 "
 - 국 민 주 택: 176,773 "
 - 주 택 재 개 발: 26,456 "
 - 토 지 구 획: 131,351 "
 - 하 수 처 리 장: 148,978 "
 - 유 료 도 로: 8,721 "
 - 의 료 보 호: 5,895 "
 - 새 마 을 소 득: 3,400 "
 - 주 차 장: 4,853 "
 - 올 림 픽 사 업: 111,107 "
 - 목 동 개 발: 251,797 "
 - 공 과 금 통 합: 1,246 "
 - 특 정 건 축 물: 12,913 "
- 기금운용계획
 - 도 시 재 개 발: 77,751 "
 - 재 해 구 호: 3,855 "

1984
제 267호

1984년 8 월 24 일

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

국 부 총 티 행 정 조 정 실

국 행 삼 323 - 364 (720-2013) 1984. 8. 24.
 수신 서울특별시장
 제목 '84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 승인'

1. 8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은 등
 재정의 추가 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.

(추경부 총 규모)

○ 일반회계 :	976,109 백만 원
○ 특별회계	
- 지방세 :	103,887 백만 원
- 수도 :	198,089 "
- 보조금 :	6,900 "
- 국비주정비 :	176,773 "
- 주민자치개발 :	26,456 "
- 퇴직금회계 :	131,351 "
- 학습자체회계 :	143,978 "
- 우편료회계 :	8,721 "
- 의료보조회계 :	5,895 "
- 소비자불소득 :	3,400 "
- 축적회계 :	4,853 "
- 청탁금수납회계 :	111,107 "
- 기타회계 :	251,797 "

- 공과금 통합 : 1,246 백만원

- 특설 건축물 : 12,913 "

◆ 기금 운동 계획

- 도시 재개발 : 77,751 "

- 재해 구호 : 3,855 "

(추경심의 내용 : 별첨)

(1) '84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(안) 심의 보고

(2) 주제 조서

2.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
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

(1) 시도유 재산증 대단위 편지는 기금적 매각을 유도하여
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재화적인 개발을 유도
할 것

(2) 향후 지역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 건설한 지하철
승차료들을 제고시키는 역주변 관광공园시설 (여행관,
진입로 등) 개발에 두전을 두어 도시 고를 난 학교와
지하철 입구주변을 종합적으로 할 것

(3) 지역 프로그 사업비는 기시달한 지시(84.7.14, 출판
본부에 따른 예산 사항)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
84년까지 소도 사업의 일정을 구체화, 본야별로 조사하여
두전 수익률 확정한 증기 계획에 의거 집행할 것

- (4) 아시아 경기 및 물류 및 관련 사업은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고, 특히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단체한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소요 투자비를 조속히 확정하여 추후 변경이 없도록 할 것
- (5) 다음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총괄한 사업 효과 분석 및 중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
(예시)
- 가로등 관리 (수도 등과 나트륨 등과의 에너지 경제성의 비교 분석)
 - 가로수 수종 개선
 - 도로변 밭을 빼 설치
 - 도로 유지 관리
- (6) 세마을 노인 소득 사업은 그 사업 효과를 현실화 논의 하여 일 세대에게는 실질적인 생계 구호가 되도록 하고 사업장소에서도 지역 개발의 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출자를 기할 것
- (7) 송주도 노후 관 재활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여 하드로 부설공사가 유발되자 일자리를 창출하고, 퇴관련사업과 동시에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확보하고 유익한 도로 복구 등으로 민생을 사전에 확보할 것
- (8) 저수지 물류회계 사업 사업 범위를 확장화하여 물류 기관, 물류 등 관리사업을 확장하는 시장 확장과 더불어 물류 기초와 수학자 등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할 것

- (9) 부동 개발 사업은 투자 사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
최종 투자 계획을 조속히 확정토록 할 것이며, 부동
개발사업의 공사 감리 실시는 현행 조직 체계 및 일정의
한계 등을 명확히 분석 수립하여 집행할 것
- (10)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전략 또는 기본 계획에
의거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, 예산지 절약
시책에 적합한 절감 대책을 수립할 것

195 기획관리실장
[Signature] [Signature] [Signature]

1

2

3

4